

2. 駐車場法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492號 · 交通部令 第958號 1991. 9. 5

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. 다만,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

나.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

다.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

라. 시장(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”가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7조제1항중 “시장(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이유 □

주차시설의 부족에 따른 공공주차장의 확충을 위하여 현재 주차장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하천고수부지 등의 자연녹지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 □

자연녹지지역중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와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과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제5조제3호).

〈건설부·교통부 제공〉